##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45

발의연월일: 2025. 3. 10.

발 의 자: 엄태영·조지연·박충권

박형수 • 이만희 • 고동진

김재섭 • 권영진 • 박덕흠

강명구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저출생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이용 요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음.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, 200만원 미만의 소득 가구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비용 부담(53.3%)으로 나타남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예정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(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17의 제목 중 "설치"를 "설치 및 이용지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제15조의17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• 운영 경비

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5조의17(지방자치단체의 산후      | 제15조의17(지방자치단체의 산후    |
| 조리원 <u>설치</u> ) ① (생 략) | 조리원 설치 및 이용지원) ①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| ②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・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청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바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원할 수 있다.</u>       |
| ② (생 략)                 | 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 |
| 제21조(경비의 보조) ① 국가는      | 제21조(경비의 보조) ①        |
|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9. (생 략)           | 1. ~ 9. (현행과 같음)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| 10. 제15조의17제1항에 따른 지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설치・운영 경비              |
| 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|